

## 번호 16-2

제 목	국문	서울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율의 차이에 관련된 요인 분석			
	영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benefit rate of regional medical insurants in Seoul			
저 자 및 소 속	국문	홍두호, 임준, 이신재*, 김창엽,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Duhoh Hong, Jun Yim, Sin-Jae Lee*, Chang-Yup Kim, Yong-Ik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O) 역학( ) 환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공의(O)	발표 형식	구연(O)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O)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0월				

### 1. 연구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의료보험은 급여수준의 제한과 불공평한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급여율의 차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므로써 소득등급이 보험급여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999년 6월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중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324,8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1999년 1월~1999년 6월까지의 의료보험 진료비청구 전산자료와 1999년 6월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등록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자격 파일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연령, 성별, 소득등급, 장애등급, 내원일수, 거주구(區), 피보험자/피부양자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보험급여율'을 사용하였고 보험 급여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분석방법은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보험급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험급여와 보험료와의 관계, 보험급여의 형평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액에 관한 연구'(조우현)에서는 '수혜기대치'를 조합의 전체 급부액을 각 세대당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할당한 액수로 정의하고 수혜액 대 수혜기대치의 비를 계산한 결과, 저소득층 보다 중간소득층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고액진료비 환자의 특성연구'(문옥륜 등)에서는 높은 급여액을 야기하는 요

인으로 재입원, 노인환자, 장기환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진료비는 재원일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명지영 등)에서는 소득계층, 거주지역, 자가건강평가결과 등에 따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소득등급, 장애등급, 입원횟수, 내원일수, 거주지역(區), 피보험자/피부양자 여부 등이 보험급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 4. 고찰

본 연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보험급여율)을 계산하므로써 지역의 료보험 통합의 기대효과 중의 하나인 보험료부담과 보험급여의 형평성 확보정도를 살펴보고 보험급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보험급여율은 정의상 보험급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납입보험료가 클수록 급여율이 낮아질 때 형평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비급여본인부담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본인부담율이 약 45%인 우리나라 본인부담금 제도를 고려할 때 보험급여율 개념 자체가 전반적인 의료의 형평성을 논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